

#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I. 예산개요

### 1. 세입예산

-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최종 예산대비 4.7% 증액된 18조 5,408억 7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대비 증 감	증감률(%)
계	17,704,559	18,540,807	836,248	4.7
지방세 수입	17,096,474	17,785,836	689,362	4.0
지방세	17,096,474	17,785,836	689,362	4.0
보통세	15,188,359	15,859,908	671,549	4.4
목적세	1,671,518	1,704,361	32,843	2.0
지난연도수입	236,597	221,567	△15,030	△6.4
세외수입	608,085	754,971	146,886	24.2
경상적세외수입	57,101	58,384	1,283	2.2
재산임대수입	11,225	12,187	962	8.6
사용료수입	1,102	2,092	989	89.8
수수료수입	700	726	26	3.8
이자수입	44,075	43,379	△695	△1.6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696,587	145,603	26.4
재산매각수입	514,961	587,255	72,295	14.0
과징금및과태료등	1,106	679	△427	△38.6
기타수입	33,861	106,676	72,815	215.0
지난연도수입	1,056	1,976	921	87.2

■ 세입예산 세부내역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대비 증 감	증감률 (%)	신출기초
계	17,704,559	18,540,807	836,248	4.7	
지방세수입 계	17,096,474	17,785,836	689,362	4.0	
보통세	15,188,359	15,859,908	671,549	4.4	
취득세	4,394,623	4,273,788	△120,835	△2.7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 감소 예상
주민세	505,197	544,955	39,758	7.9	충급여 상승 등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
재산세	2,369,431	2,615,116	245,685	10.4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가격 상승 등
자동차세	1,101,638	1,132,092	30,454	2.8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증가
레저세	132,083	131,021	△1,062	△0.8	용산구 장외발매소 폐업 등으로 세입 감소
담배소비세	624,383	565,175	△59,208	△9.5	정부 금연정책 등에 따른 흡연을 감소
지방소비세	1,212,695	1,359,199	146,504	12.1	소비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소비 증가 등
지방소득세	4,848,309	5,238,562	390,253	8.0	2018년 경제상황에 따른 법인 실적 개선 등
목적세	1,671,518	1,704,361	32,843	2.0	
지역자원시설세	275,965	284,868	8,903	3.2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가격 상승 등
지방교육세	1,395,553	1,419,493	23,940	1.7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본세 증가에 따른 증가
지난년도수입	236,597	221,567	△15,030	△6.4	
지난년도수입	236,597	221,567	△15,030	△6.4	법인 및 개인사업자 폐업 등 장수여건 악화
세외수입 계	608,085	754,971	146,886	24.2	
경상적 세외수입	57,101	58,384	1,283	2.2	
재산임대수입	11,225	12,187	962	8.6	
공유재산임대료	11,225	12,187	962	8.6	관리위임 사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1,102	2,092	89	89.8	
기타사용료	1,102	2,092	989	89.8	사유재산 사용료
수수료수입	700	726	26	3.8	
증지수입	700	726	26	3.8	수입증지 판매 수입
이지수입	44,075	43,379	△695	△1.6	
공공예금이지수입	39,267	39,200	△66	△0.2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이지수입
기타이지수입	4,808	4,179	△629	△13.1	세입세출외현금 운용 이지수입 1,027 정수계좌관련 이지수입 등 3,149 채납자 분납통장 발생이자 3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대비 증 감	증감률 (%)	산출기초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696,587	145,603	26.4	
재산매각수입	514,961	587,255	72,295	14.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14,961	587,255	72,295	14.0	서울의료원 매각수입 514,961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72,294
과징금및과태료등	1,106	679	△427	△38.6	
변상금	962	513	△450	△46.7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위약금	144	166	22	15.6	공사 및 납품기한 지체 위약금
기타수입	33,861	106,676	15	215.0	
채납처분수입	2	2	0	0.0	채납처분 소요비용 징수
그외수입	33,821	106,675	72,854	215.4	시금고 출연금 102,800 법인카드 캐시백 적립금 등 572 시유재산 위탁 예금 이자 수입 52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 1,246 주행분자동차세 관련 이자등 2,005
지ান연도수입	1,056	1,976	921	87.2	
지안연도수입	1,056	1,976	921	87.2	매각입대수입 등의 채납금 1,898 지안연도 수입 78

- 각 사항별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6,893억 6천 2백만원(전년대비 4.0%)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6,715억 4천 9백만원(전년대비 4.4%) 증가
    - 목적세는 328억 4천 3백만원(전년대비 2.0%) 증가,
    - 지안연도수입은 150억 3천만원(전년대비 6.4%)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1,468억 8천 6백만원(전년대비 24.2%)이 증가하였으며,
    -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8천 3백만원(전년대비 2.2%) 증가,
    - 임시적 세외수입은 1,456억 3백만원(전년대비 26.4%)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 과목별 2018년 예산 대비 주요증가 내역은
  - 보통세 중 지방소득세(3,903억원), 재산세(2,457억원), 지방소비세(1,465억원), 주민세(398억원), 자동차세(304억원)이며

-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239억원), 지역자원시설세(89억원)와
-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10억원), 사용료수입(1억원)과
-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729억원), 재산매각수입(723억원), 지난 연도수입(9억원) 등이 증가함.

○ 세입예산 과목별 2018년 예산 대비 주요감소 내역은

- 보통세 중 취득세(1,208억원), 담배소비세(592억원), 레저세(11억원)와,
- 지난연도 수입(150억원)과,
-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7억원)과,
-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과징금(4억원) 등이 감소함.

##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19년 세출예산은 2조 3,858억 9천6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조 3,204억 6천9백만원 대비 2.8% 증액된 수준이며, 2018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4,538억 3천 3백만원 대비 2.8%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도(당초)	2019년도	2018년대비 증감	증감률	
총계	2,320,469,119	2,385,896,257	65,427,138	2.8%	
행정관리	소계	826,896,052	765,002,457	△61,893,595	△7.5%
	행정운영경비	712,638,149	736,925,071	24,286,922	3.4%
	재무활동	-	-	-	-
	사업비	114,257,903	28,077,386	△86,180,517	△75.4%
교부금	1,493,573,067	1,620,893,800	127,320,733	8.5%	

○ 2019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b>합 계</b>	<b>2,320,469</b>	<b>2,453,833</b>	<b>2,385,896</b>	<b>65,427</b>	<b>2.8%</b>
<b>재무과 계</b>	<b>714,389</b>	<b>717,478</b>	<b>742,777</b>	<b>28,388</b>	<b>4.0%</b>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2,191	5,281	6,302	4,111	187.7%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1,810	4,900	6,057	4,247	234.7%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539	4,629	1,054	△486	△31.6%
2018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1	231	232	1	0.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	40	40	-	-
수입증지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	-	337	337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	-	4,395	4,395	-
체계적인 계약제도 운영	381	381	244	△137	△35.9%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0	20	20	-	-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98	98	116	18	18.6%
서울계약담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262	262	107	△ 155	△59.0%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712,198	712,198	736,475	24,278	3.4%
기본경비	1,546	1,546	1,540	△6	△0.4%
기본경비	1,546	1,546	1,540	△6	△0.4%
인력운영비	710,652	710,652	734,935	24,284	3.4%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10,652	710,652	734,935	24,284	3.4%
<b>자산관리과 계</b>	<b>94,537</b>	<b>95,017</b>	<b>3,432</b>	<b>△91,105</b>	<b>△96.4%</b>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94,493	94,973	3,388	△91,105	△96.4%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94,493	94,973	3,388	△91,105	△96.4%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90,738	90,738	700	△90,038	△99.2%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3,330	3,810	2,617	△712	△21.4%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25	425	71	△355	△83.3%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자산관리과)	44	44	44	-	-
기본경비	44	44	44	-	-
기본경비	44	44	44	-	-
<b>재무국 계약심사과</b>	<b>163</b>	<b>163</b>	<b>158</b>	<b>△5</b>	<b>△3.1%</b>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97	97	90	△7	△7.4%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97	97	90	△7	△7.4%
계약심사 업무추진	61	61	54	△7	△11.7%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6	36	36	-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계약심사과)	66	66	68	2	3.1%
기본경비	66	66	68	2	3.1%
기본경비	66	66	68	2	3.1%
<b>재무국 세제과</b>	<b>1,132,469</b>	<b>1,203,711</b>	<b>1,246,181</b>	<b>113,712</b>	<b>10.0%</b>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30	1,953	147	17	13.3%
납세자 권리보호	120	120	137	17	14.4%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04	104	112	8	7.6%
마을세무사 운영	15	15	25	9	60.6%
지방세제 개선	10	10	10	-	-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10	10	-	-
세수증대 활동지원	-	1,823	-	-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	1,823	-	-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제과)	120	120	122	2	1.6%
기본경비	120	120	122	2	1.6%
기본경비	120	120	122	2	1.6%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132,219	1,201,637	1,245,912	113,693	10.0%
자치구교부금(재무국 세제과)	1,128,175	1,197,593	1,243,665	115,490	10.2%
재정보전금	1,128,175	1,197,593	1,243,665	115,490	10.2%
출연(재무국 세제과)	4,044	4,044	2,247	△1,797	△44.4%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4,044	4,044	2,247	△1,797	△44.4%
<b>재무국 세무과</b>	<b>371,216</b>	<b>429,768</b>	<b>385,677</b>	<b>14,461</b>	<b>3.9%</b>
시세입 목표달성	9,727	9,727	10,555	828	8.5%
효율적인 세입관리	1,527	1,527	1,526	△1	△0.1%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531	531	547	16	3.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14	814	801	△13	△1.6%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82	182	179	△4	△2.0%
세수증대 동기부여	5,758	5,758	5,896	138	2.4%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87	187	193	6	3.2%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411	411	543	132	32.2%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30	30	-	-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	130	130	-	-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	5,000	5,000	-	-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관리	1,623	1,623	2,290	667	41.1%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77	1,577	1,602	25	1.6%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5	45	23	△22	△48.8%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안 컨설팅	-	-	664	664	-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819	819	843	24	2.9%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19	819	843	24	2.9%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135	135	141	5	3.9%
기본경비	135	135	141	5	3.9%
기본경비	135	135	141	5	3.9%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361,354	419,907	374,982	13,628	3.8%
자치구교부금(재무국 세무과)	361,354	419,907	374,982	13,628	3.8%
시세 징수교부금	361,354	419,907	374,982	13,628	3.8%
<b>재무국 38세금징수과</b>	<b>7,696</b>	<b>7,696</b>	<b>7,671</b>	<b>△25</b>	<b>△0.3%</b>
조세정의 실현	7,621	7,621	7,596	△25	△0.3%
강도높은 체납 시세징수지원	7,334	7,334	7,317	△16	△0.2%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19	2,219	2,222	3	0.1%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5,101	5,101	5,084	△17	△0.3%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3	13	11	△2	△16.7%
강도 높은 고액체납시세징수 지원	288	288	279	△9	△3.1%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88	288	279	△9	△3.1%
행정운영경비(재무국 38세금징수과)	75	75	75	-	0.1%
기본경비	75	75	75	-	0.1%
기본경비	75	75	75	-	0.1%

## II. 검토 의견

### 1. 2019년도 경기전망

- 서울특별시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 최종예산 대비 0.5%(1,762억원) 증액한 **35조 7,843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 ※ 2018년도 예산(기정: 31조 8,141억원, 최종: 35조 6,081억원)
- 재무국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등 복지예산 증가, 일자리 예산 확대,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등을 위한 공원 환경 개선 등 재정 확대와 자치구 및 교육청 등 의무 지출 비용 증가 등으로 한정된 자원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9년도 경제 여건은 고용 부진과 반도체 초과공급 우려 등에 따른 투자 조정,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금년보다 낮은 2% 중반에서 2%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음.
  - ※ 기관별로 내년도 성장률은 정부 2.8%, 한국은행 2.7%, 국회 2.8%, KDI 2.7%를 예상하고 있으며
  - ※ 국제기관인 IMF 및 OECD도 각각 2.9%와 2.8%를 전망하고 있음

#### 〈주요 연구기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2018~2019년)〉

(단위 : %)

구 분	정 부	KDI	한국은행	국 회	IMF	OECD
2018년	2.9	2.9	2.7	2.7	2.9	2.7
2019년	2.8	2.7	2.7	2.8	2.9	2.8

- ※ 세계 경제 여건은 미국등 선진국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고용여건 개선, 소비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내재(참고자료: IMF 경제성장 보고서)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2018~2019년)〉

(단위 : %)

구	분	IMF		OECD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성	장	3.9	3.9	3.7	3.7

- 지방세수입과 관련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 8·27대책 및 9·13대책 발표로 서울지역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 및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었고, 금년 4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시행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고 있고 금년보다 더 강한 규제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세입여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발표된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요약 〉

-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8·27 대책)
  - 투기지역 추가 지정(4개구) : 동작, 종로, 중구, 동대문
  - 이에 따라 서울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투기지역은 15개구로 확대
- 주택시장 안정 대책(9·13 대책)
  - 2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구입이나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2주택 또는 고가주택에 0.2%~0.7%, 3주택이상은 0.1%~1.2%P 추가 과세하고, 조정지역내 2주택 및 3주택이상은 세부담을 300%로 상향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시 LTV를 80%에서 40%로 강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까지 인상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 최근 7년간 부동산거래 현황, 서울 ]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년	226,550	19,454	17,624	23,735	19,783	18,271	19,150	16,179	17,433	16,493	18,224	17,723	22,481
	누 계	19,454	37,078	60,813	80,596	98,867	118,017	134,196	151,629	168,122	186,346	204,069	226,550
'12년	198,038	14,055	16,413	16,372	17,606	16,905	15,497	14,289	15,124	11,120	17,427	20,001	23,229
	누 계	14,055	30,468	46,840	64,446	81,351	96,848	111,137	126,261	137,381	154,808	174,809	198,038
'13년	234,626	13,321	11,879	17,384	20,129	22,856	28,134	16,729	15,646	16,497	23,819	21,753	26,479
	누 계	13,321	25,200	42,584	62,713	85,569	113,703	130,432	146,078	162,575	186,394	208,147	234,626
'14년	304,435	20,827	23,450	29,262	26,178	21,467	20,311	24,149	23,916	26,340	33,085	27,771	27,679
	누 계	20,827	44,277	73,539	99,717	121,184	141,495	165,644	189,560	215,900	248,985	276,756	304,435
'15년	415,242	24,628	26,420	39,946	40,134	37,544	37,041	40,813	32,790	31,655	35,771	33,724	34,776
	누 계	24,628	51,048	90,994	131,128	168,672	205,713	246,526	279,316	310,971	346,742	380,466	415,242
'16년	429,942	27,333	24,996	29,912	33,705	37,471	37,381	42,880	43,541	34,633	38,986	39,679	39,425
	누 계	27,333	52,329	82,241	115,946	153,417	190,798	233,678	277,219	311,852	350,838	390,517	429,942
'17년	459,828	28,306	31,075	34,544	34,895	41,277	47,873	53,433	52,313	36,793	26,519	32,341	40,459
	누 계	28,306	59,381	93,925	128,820	170,097	217,970	271,403	323,716	360,509	387,028	419,369	459,828
'18년	224,090	40,633	34,686	53,145	31,652	33,947	30,027	41,514	34,132	37,426	42,548		
	누 계	40,633	75,319	128,464	160,116	194,063	224,090	265,604	299,736	337,162	379,710		



## 2. 세입예산 검토

○ 2019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17조 7,045억 5천 9백만원) 대비 4.7%(8,362억 4천 8백만원) 증가된 18조 5,408억 7백만원이며,

- 지방세 수입은 전년(17조 964억 7천 4백만원) 대비 4.0%(6,893억 6천 2백만원) 증액된 17조 7,858억 3천 6백만원이고,
- 세외수입은 전년(6,080억 8천 5백만원) 대비 24.2%(1,468억 8천 6백만원) 증액된 7,549억 7천 1백만원임.

※ 지방세는 2018년 경제성장에 의한 법인 실적 개선에 따라 지방소득세 3,903억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재산세 2,457억원, 소비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소비세 1,465억원, 총급여 상승 등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에 따라 주민세 398억원,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304억원, 본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23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 감소가 예상되어 취득세 1,208억원, 정부 금연정책 등에 따른 흡연율 감소가 예상되어 담배소비세는 592억원, 용산구 장외발매소 폐업 등으로 세입 감소 예상되어 레저세 11억원, 법인 및 개인사업자 폐업 등 징수여건 악화로 지난해도수입 150억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고,

※ 세외수입은 시금고 출연금 증가에 따라 그외수입 729억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723억원, 재산임대수입 10억원과 사용료수입 1억원과 매각임대수입 등의 체납금 징수율 증가에 따른 지난해도수입 9억원 등을 증액하고, 징수여건 악화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4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 보 통 세

- 전년대비 4.4% 증가된 15조 8,599억 8백만원의 보통세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85.5%(전년도 85.5%)를 차지하고 있음.

## ■ 취 득 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의 취득 시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입으로 시세 총 세입액의 24.0%(전년도 25.7%)를 차지하는 4조 2,737억 8천 8백만원(전년 대비 2.7% 감액)을 편성하였음.
  - 취득세는 부동산 3조 6,160억 3천 9백만원, 차량분 6,577억 4천 9백만원 등 총 4조 2,737억 8천 8백만원(전년 대비 2.7% 감소<sup>1)</sup>)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 “부동산분”의 경우 2018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거래증감율(주택△13.06%, 건물 △11.49%, 토지 0.11%), 매매가격 상승률(주택 1.18%, 건물 2.02%, 토지 3.30%)과 징수율(99.34%)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 “차량분”의 경우 2018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최근 등록대수 증감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3년 평균 자동차 등록대수 신장률(101.01%)과 징수율(99.86%)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2019년도 취득세의 추계는 전년 예산(4조 3,946억 2천 3백만원) 대비 △2.7% 감소한 4조 2,737억 8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부동산은 전년 예산대비 △3.5% 감소, 차량은 1.7% 증액한 규모임.

1) 전년도 대비 증감은 전년도 예산액(4조 3,946억 2천 3백만원)과 비교한 증감 표시임.

- 취득세 중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9년도 추계시 반영된 부동산 거래 감소 규모를 과거 참여정부의 규제정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비율을 적용하였다고는 하나, 정부의 서울지역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8·27 대책),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정책(9·13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여 부동산 거래 감소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2019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취득세 징수 추이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추계
예 산 액	3,470,920	3,302,152	4,007,054	4,394,623	4,273,788 (△2.7%)
결산(징수)액	4,527,595	4,892,109	5,295,211	3,841,934 (17.9%)	-

※ 2018년도분 결산전망액: 4,978,519백만원(결산예상률 113.3%)

## □ 추계 방법

- 부동산과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추계
  - (부동산) '18년 부과전망액, 거래증감율,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
  - (차 량) 연도별 차량등록대수 신장율을 반영하여 추계

### ① 부동산 : '18년 부과전망액 기준 유형별 점유비, 거래증감율, 매매가격 등 과표 신장율 및 징수율 적용

- 유형별 점유비 : 최근 3년 주택·건물·토지의 유형별 부과액 점유비
- 거래증감율 : '18년 정부 정책을 과거 시행 정책과 비교 후 현재와 유사한 정부정책을 시행했던 시기('04년~'08년)의 유형별 거래증감율 반영
  - ▶ 거래 증감율 : 주택(△13.06%), 건물(△11.49%), 토지(0.11%)

#### 〈부동산 거래 신장율 분석〉

- 과거 시행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부동산이 과열될 경우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함으로써 6년간('03년~'08년) 규제 정책이 시행 되었으며,
- 강력한 규제 정책에 따라 실제 '07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따라서 2019년 부동산 거래 증감율은 과거 규제정책 발표 후 시장에 반영된 연도('04년~'08년)의 최고·최저 증감율 제외 3년 평균 거래 증감율 반영하여 추계

구 분	총거래량	주 택	건 물	토 지
증감율	- 5.99%	-13.06%	-11.49%	0.11%

- 과표신장율 : 최근 주택, 토지 등 매매가격, 건물의  $m^2$ 당 공시가격,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반영
  - ▶ 주택 (101.18%), 건물(102.02%), 토지(103.30%) 각각 반영

### ② 차 량 : 차량 등록대수 신장율 반영

- 자동차 등록대수 신장율은 매년 비슷하게 유지 되는 바, 최근 신장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3년 평균 차량 등록대수 신장율 적용
  - ▶ 적용비율 : 101.01%(등록대수는 '18년 대비 약 3만대 증가 예상)

산출 내역

○ 추계 산출식

- 부동산 : '18년 부과전망액 × 유형별(주택·건물·토지) 점유비 × 유형별(주택·건물·토지)거래 증감율 × 과표신장율 × 징수율(최근 5년 평균)
- 차 량 : '18년 부과전망액 × 등록대수 신장율 × 징수율(최근 3년 평균)

○ 산출내역 : 4,273,788 백만원

- 부동산 : 3,616,039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전망액	점유비	거래증감율	과표신장율	징수율	2019년 추계액
주 택	3,926,952	51.34	86.94	101.18	99.34	1,761,773
건 물	3,926,952	21.26	88.51	102.02	99.34	748,895
토 지	3,926,952	27.40	100.11	103.30	99.34	1,105,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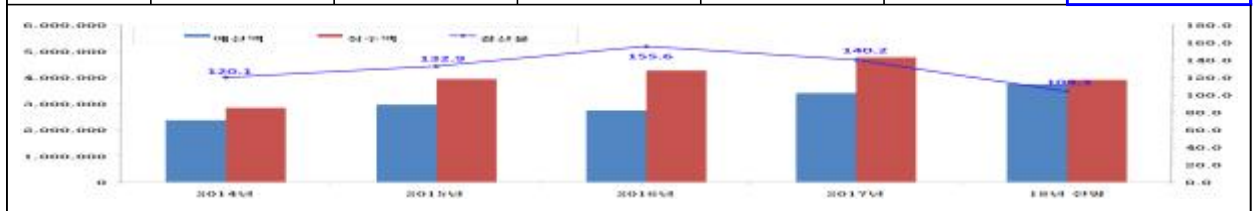
- 차 량 : 657,749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2018년 부과전망액	등록대수신장율	징수율	2019년 추계액
652,085	101.01%	99.86%	657,749

최근 5년 예산 및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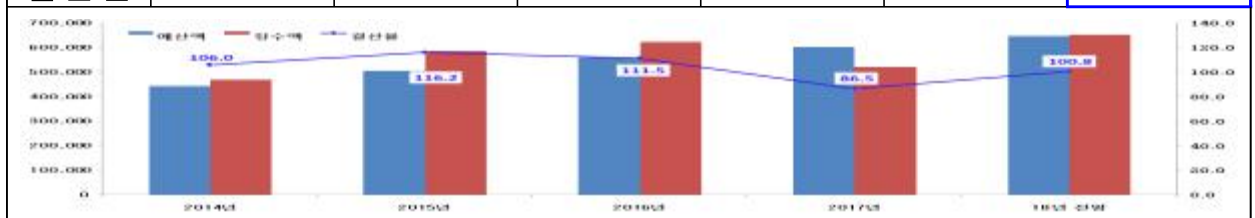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2,367,329	2,966,662	2,743,833	3,406,022	3,748,089	3,616,039
징수액	2,842,845	3,941,660	4,269,792	4,775,578	3,910,459	-
결산율	120.1	132.9	155.6	140.2	104.3	



○ 차 량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441,875	504,258	558,319	601,032	646,534	657,749
징수액	468,328	585,935	622,317	519,633	651,498	
결산율	106.0	116.2	111.5	86.5	100.8	



## 주 민 세

-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장 면적, 종업원급 여충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세 총 세입액의 3.1%를 차지하는 5,449억 5천 5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7.9%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균등분”은 매년 일정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안정적 세목으로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과세대상별 2018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세대수·사업자수 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522억원으로 추계하고,
- “재산분”의 경우는 사업장 연면적(330㎡ 초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임을 감안하여 사업자수 증감률을 적용하여 246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 “종업원분”의 경우는 종업원과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목임을 감안하여 취업자수 증감률(99.64%)과 임금상승률(103.12%)을 반영하여 4,681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최근 3년 개인세대수, 개인 및 법인사업자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상
세 대 수	4,189,839	4,220,082	4,241,547	<b>4,250,454</b>
개 인 사 업 자	402,847	455,552	450,407	<b>471,531</b>
법 인 사 업 자	258,720	274,208	295,860	<b>313,404</b>



- 2019년도 주민세는 종합적으로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모두 사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 규모는 매년 소폭 증가 추세라 할 수 있으나, 종업원분 추계시 내년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하여 고용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19년 최저임금도 10.9%가 인상되는 되는 등 소득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율을 3%로 반영하여 추계한 것은 다소 보수적인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겠음.

주민세 세입추계(A+B+C) : 505,197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계액	산 출 내 역
균등분(A)	52,227	
- 개 인	(16,074)	◦ 2018년 부과전망 × 주민등록세대수 신장률 × 징수율 = (19,068백만원) × (100.21%) × (84.12%) = 16,074백만원
- 개인사업자	(20,604)	◦ 2018년 부과전망 × 개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 (21,564백만원) × (104.69%) × (91.27%) = 20,604백만원
- 법인사업자	(15,549)	◦ 2018년 부과전망 × 법인사업자수 신장률 × 징수율 = 추계액 (17,475백만원) × (105.93%) × (84.00%) = 15,549백만원
재산분(B)	24,625	◦ 2018년 징수전망 × 사업자수 증감률 = 추계액 (23,522백만원) × (104.69%) = 24,625백만원
종업원분(C)	468,103	◦ 2018년 징수전망 × 취업자증감율 × 임금상승율 = 추계액 (455,580백만원) × (99.64%) × (103.12%) = 468,103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 산 액	396,029	404,019	420,847	478,803	505,197	544,955
징 수 액	389,360	409,767	468,308	496,310	529,502	
결 산 율	98.3	101.4	111.3	103.7	104.8	

##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는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법인 소득, 특별징수된 소득에 과세되는 지방세로 2015년 이전까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었으나, 2015년 이후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입은 신장 추세에 있음.
- 지방소득세는 시세 총 세입액의 29.5%로 시세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수추계는 국세 예산안을 반영하여 5조 2,385억 6천 2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8.0%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종합소득분**은 내년도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고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7,054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9% 증가한 규모로 추계하고 있으며,
  - **양도소득분**은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이에 따른 대출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부담 증가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으로 거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4,892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0.6% 증가한 규모로 추계 하고 있음.
  - **법인소득분**은 전년도 법인소득에 대해 다음연도에 확정 신고하는 세목으로 수출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법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어 전년 예산(1조 7,221억 6천 5백만원) 보다 12.9% 증가한 1조 9,444억 5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별징수분**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 및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목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명목 임금상승, 취업자 수 증가등이 예상되어 전년 예산(2조 592억 3천 9백만원) 보다 2.0% 증가한 2조 994억 4천 9백만원을 추계하고 있음.

**【지방소득세 서울시 점유비 적용 현황】**

- ① 종합소득분 : 정부예산(17조 7,913억원), 점유비(39.65%)  
- 최근 4년 중 특수요인('15년)제외 3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39.65%) 적용
- ② 양도소득분 : 정부예산(14조 2,565억원), 점유비(34.32%)  
- 최근 4년 중 특수요인('15년)제외 3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34.32%) 적용
- ③ 법인소득분 : 정부예산(79조 2,664억원), 점유비(24.53%)  
- 최근 4년 중 특수요인('15년)제외 3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24.53%) 적용
- ④ 특별징수분 : 정부예산(48조 4,302억원), 점유비(43.35%)  
- 최근 4년 중 특수요인('15년)제외 3년 평균 서울시 점유비(43.35%) 적용

○ 2019년도 정부에서 제출한 소득세 및 법인세 예산안은 전년 예산(135조원) 대비 17.5% 증가한 160조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무국에서 편성한 지방소득세는 전년 예산(4조 8,483억원) 대비 8.0% 증액 편성한바,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 및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019년 정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9년 예산	2018년	증가 규모	
		본예산	금액	비율
합계	1,597,444	1,359,417	238,027	17.5
종합소득세	177,913	166,749	11,164	6.7
양도소득세	142,565	102,795	39,770	38.7
법인세	792,664	630,461	162,203	25.7
원천징수	484,302	459,412	24,890	5.4

[2019년 정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년			2016년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소득세 합계	652,718	768,346	117.7	651,272	701,194	107.7
종합소득세	144,179	167,840	116.4	142,261	149,898	105.4
양도소득세	106,939	151,337	141.5	110,548	136,833	123.8
원천징수분	401,600	449,169	111.8	398,463	414,463	104.0
법인세	539,726	591,766	109.6	513,768	521,154	101.4

[지방소득세 결산율 추이] (2018년9월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	결산전망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합 계	4,848	5,183	106.9	4,230	4,641	109.7	4,132	4,189	101.4
종합소득분	692	729	105.3	618	642	103.9	584	597	102.2
양도소득분	375	624	166.4	406	541	133.3	363	457	125.9
법인소득분	1,722	1,739	101.0	1,542	1,475	95.7	1,416	1,352	95.5
특별징수분	2,059	2,091	101.6	1,664	1,983	119.2	1,769	1,783	100.8

※ 2017년도 관련 국세인 소득세는 117.7%, 지방소득세는 109.7%의 결산율을 보이는 등 매년 국세 및 시세의 예산대비 결산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 추계에 의존한 추계보다는 서울시의 독자적 추계모델 개발 마련 필요.

- 최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후 지방소득세는 증가 추세이며, 정부도 매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경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시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세수추계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세입 추계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세입예산의 추계는 세출예산의 규모에 맞추기 위한 적극적 추계보다는 실질적인 세입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재무국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득세 세입추계(A+B+C+D) : 5조 2,385억 6천 2백만원		
구분	추계액	산출내역
A: 종합소득분	(705,425)	'19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9년 추계액 17조 7,913억원 × 10% × 39.65% = 705,425백만원
B: 양도소득분	(489,283)	'19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9년 추계액 14조 2,565억원 × 10% × 34.32% = 489,283백만원
C: 법인소득분	(1,944,405)	'19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9년 추계액 79조 2,664억원 × 10% × 24.53% = 1,944,405백만원
D: 특별징수분	(2,099,449)	'19년 국세예산안 × 지방세 비율 × 우리시점유비 = '19년 추계액 48조 4,302억원 × 10% × 43.35% = 2,099,449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2018.6월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3,482,178	3,747,613	4,131,153	4,229,767	4,848,309	5,238,562
징수액	3,310,020	4,230,996	4,189,316	4,639,565	4,893,589	
결산율	95.1	112.9	101.4	109.7	100.9	

■ **지방소비세**

-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2019년도 부가가치세 예산편성액에 지방소비세 비율(11%) 및 서울시 안분비율(행정자치부 배부기준 기준 5%분 13.746%와 취득세인하관련 6%분 27.198%)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2.1%(1,465억 4백만원)를 증액한 1조 3,591억 9천 9백만원(전년도 예산 1조 2,126억 9천 5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는 본세인 부가가치세가 민간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된 세목인바,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목으로, 정부의 소비활성화 추진정책(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속 추진), 물가상승, 경제성장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2018년도 대비 12.1%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추계로 보임.

- 한편,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19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정부(기획재정부)는 72조 2,45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3%(4조 9,13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sup>2)</sup> 실제 민간소비 증가 효과<sup>3)</sup>가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재무국은 정부의 부가가치세 예산안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가치분 소득 감소, 최근 실업율 증가 등으로 국내 소비 감소 가능성 내재,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입 불확실성 상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 세입이 과대 추계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2) 2019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보도 자료 참고

3) 2019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 2.7%

[2019년 정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년			2016년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부가가치세	615,353	670,870	109.0	597,657	618,282	103.5

[지방소비세 결산율 추이]

(2018년9월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	결산전망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지방소비세	1,213	1,335	110.1	1,056	1,305	123.6	950	1,092	114.9

※ 2017년도 관련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109.0%, 지방소비세는 123.6%의 결산율을 보이는 등 매년 국세 및 시세의 예산대비 결산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 추계에 의존한 추계보다는 서울시의 독자적 추계모델 개발 마련 필요.

- 또한,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도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9년에 4%, 2020년에 6%씩 추가 인상할 것으로 발표하였는 바, 향후 지방소비세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는 안분율에 대한 가중치 적용 시 서울시 자치재정권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의견제시 등 재무국의 보다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소비세 요약

① 소비지출 비율(5%) 분

- '10.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국세)의 5% 적용
- 특별징수의무자(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납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납부('18년 납입관리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8년 서울시 안분비율 : 13.746%
- 안분방법 : 전국지방소비세(5%) × 서울시 안분비율 = 지방소비세 세입

② 취득세 감면 보전(6%) 분

- '13.12.26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로 감면된 취득세 보전 성격
- '18년 서울시 안분비율 : 27.198%
- 안분방법 : 전국지방소비세(6%) - [지방교부세(19.24%) + 지방교육청 교부금(20.27%)] × 서울시 안분비율 = 지방소비세 세입

지방소비세 추계액(A + B) : 1,359,199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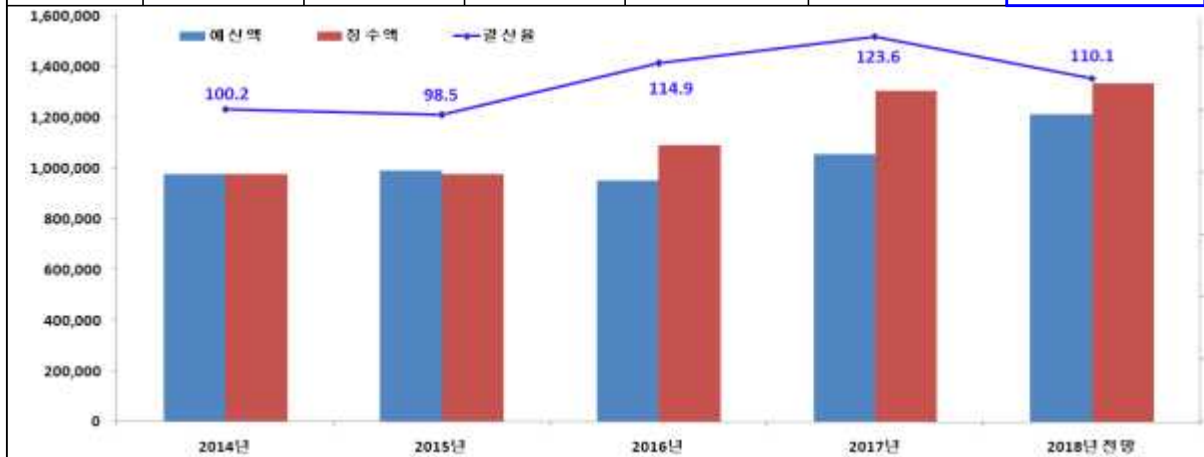
**산 출 내 역**

- A : 기존 5% 추계액 = 전국 지방소비세 비율(5%) × 우리시 점유비  
= 2019년 지방소비세(기존 5%분) 추계액  
4조 587억 7천만원 × 13.746% = 557,908백만원
- B : 취득세 감면보전분 6% 추계액 =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소비세 인상율(6%) -  
[지방교부세 비율(19.24%) + 교육청교부금(20.27%)] × 우리시 전  
국대비 점유비율 = 2019년 취득세 감면보전분 추계액  
4조 8,704억6천 3백만원 - (9,370억 7천 7백만원 + 9,872억  
4천 3백만원) × 27.198% = 801,291백만원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975,594	993,159	950,428	1,055,931	1,212,695	1,359,199
징수액	977,587	977,789	1,092,322	1,305,360	1,335,381	
결산율	100.2	98.5	114.9	123.6	110.1	



##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자동차 소유주(소유분 자동차세)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주행분 자동차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1조 1,320억 9천 2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2.8%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음.
- 차량등록대수 증감률과 연도별 세입이 매년 비슷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어, 2018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신장율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 ◇ 최근 5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 대, %)

구 분	'18.6월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등록대수	3,107,680	3,104,246	3,071,731	3,045,442	3,013,541	2,973,877
증 감 율	100.1	101.6	100.9	101.6	101.33	100.16

- 자동차세 보전분의 경우는 전국 자동차세 보전액(9,830억원)을 기준으로 우리시 2018년 상반기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안분율	16.19	16.64	16.19	16.99	16.64	17.24	16.99	17.58	17.24	18.17	17.58	18.72	18.17

- 유가(운수업체) 보전분의 경우는 2015년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었고, 내년도 영업용 차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 추계는 택시·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세출예산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2018.10.24.)한 유류세 6개월 한시 인하와 관련하여 유류세에 포함된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 감소 예상액 약 392억원에 대하여는 2019년도 적정 세입예산 운용을 위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 예상 : 약 392억원 감소 예상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재원으로 자동차세보전분과 유가 보전분으로 구분하여 시·도별 안분율에 따라 교부
  - ▶ 자동차세 보전분 : 9,830억원 × 서울시 안분율(15.82%)
  - ▶ 유가 보전분 : [(교통·에너지·환경세)×26%-9,830억원]×서울시 안분율(17.71%)
- 유류세 인하에 따라 자동차세 주행분(유가보전분)은 약 392억원 감소 예상

○ 소유분 자동차세(A) : 6,231억 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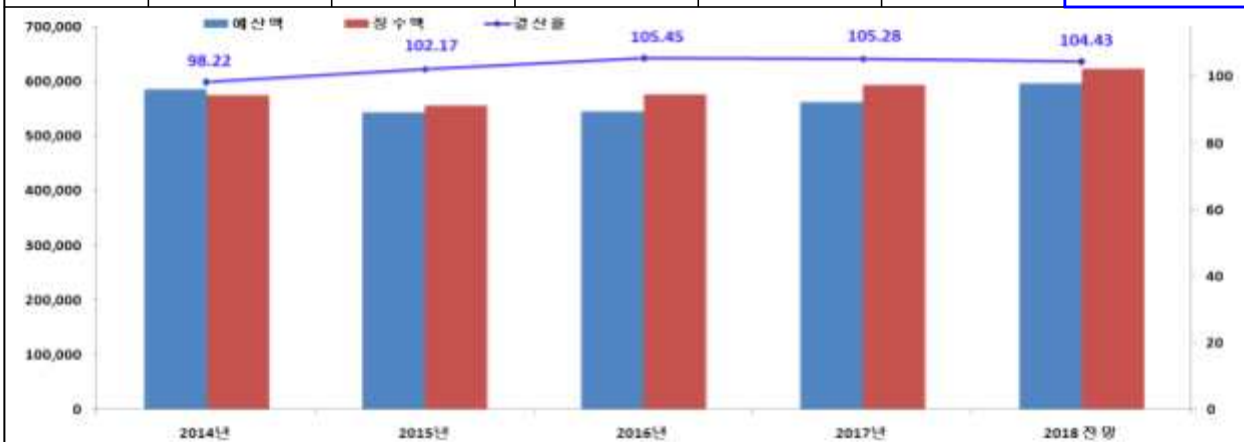
산 출 내 역

◦ '18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율(직전연도 세액신장율) × 징수율 = '19년 추계액  
7,020억 5천 5백만원 × 101.48% × 87.46% = 623,104백만원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584,803	543,727	545,488	562,675	596,200	623,104
징수액	574,413	555,510	575,204	592,390	622,582	
결산율	98.22	102.17	105.45	105.28	104.43	



◇ **주행분 자동차세(B) : 5,089억 8천 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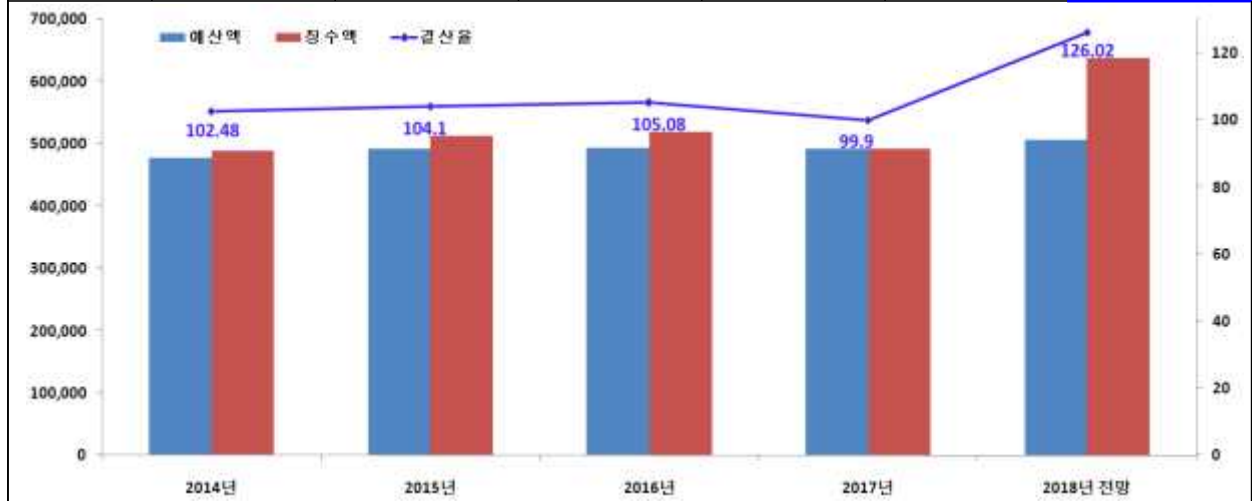
**산 출 내 역**

- 자동차세 보전분 = 159,125백만원
  - 전국자동차세보전분 × 우리시안분비율 = '19년 추계액  
(983,000백만원 × 16.187673% = 159,125백만원)
- 유가(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분 = 349,863백만원
  - '18년 유가보조금 세출예산(택시·화물+버스) = '19년 추계액  
[136,405백만원 + 162,743백만원 + 33,966 백만원] × 105.028% = 349,863백만원)

◇ **연도별 주행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477,269	492,530	493,846	491,865	505,438	508,988
징수액	489,114	512,723	518,939	491,393	636,973	
결산율	102.48	104.1	105.08	99.9	126.02	



## ■ 레저세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투표권발매금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1,310억 2천 1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Delta 0.8\%$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레저세는 레저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세입 증가 추세인 세목이었으나, 사행성 산업 위축 및 레저활동 다양화, 성동구('12년 경마)와 송파구('14년, 경정, 경륜), 용산구('17.12월) 장외발매소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세입은 감소세로 전환

- 2019년에는 용산구 화상경마장 폐쇄로 인해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8년 징수 전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후 최근 3년 평균 유형별 세액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 연도별 레저세 징수 추이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추계
예 산 액	147,366	129,457	126,768	132,083	131,021 ( $\Delta 0.8\%$ )
결산(징수)액	133,449	138,958	140,861	95,106 (72.0%)	-

※ 2018년도분 결산전망액: 131,368백만원(결산예상률 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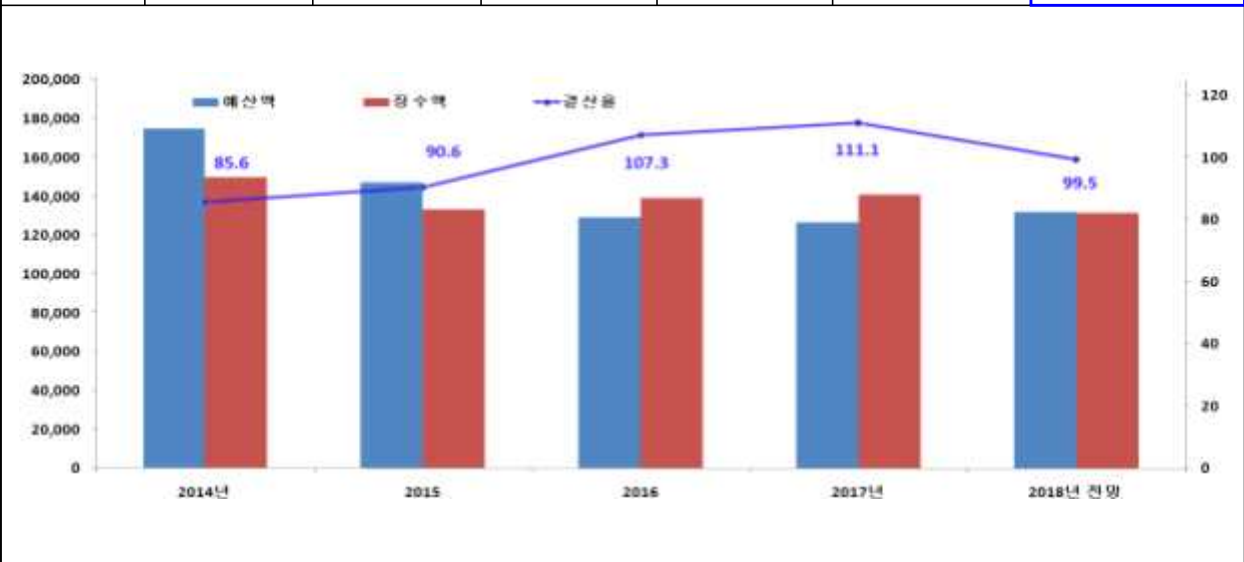
◇ 레저세(A+B+C) : 1,310억 2천 1백만원

산 출 내 역	
○ 경마(A) : '18년도 징수전망 × 세액신장률	87,557백만원 × 98.94% = 86,629백만원
○ 경륜(B) : '18년도 징수전망 × 세액신장률	34,793백만원 × 97.68% = 33,986백만원
○ 경정(C) : '18년도 징수전망 × 세액신장률	10,780백만원 × 96.53% = 10,406백만원

◇ 최근 5년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174,795	147,366	129,457	126,768	132,083	131,021
징수액	149,691	133,449	138,958	140,861	131,368	
결산율	85.6	90.6	107.3	111.1	99.5	



##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5,651억 7천 5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9.5% 감소)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경기회복 및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음식점 등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성인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음.

### ◇ 흡연율 및 담배판매량 현황

(단위 : %, 천갑)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흡 연 율	20.00	20.50	22.60	24.20	24.10	25.80
담배판매량	630,324	656,596	538,546	846,044	818,231	847,264

※ 흡연율 자료출처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담배판매량 : 담배소비세 징수액 ÷ 갑당 담배소비세액으로 추정하여 계산된 값

### ◇ 담배판매량 증감 현황

(단위 : 천갑, %)

구 분	'18 전망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담배판매량	567,256	630,324	656,596	538,546	846,044	818,231
증 감 율	90.00	96.00	121.92	63.65	103.4	96.57

-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641원→1,007원) 이후, 세입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낮은(896원/갑) 전자담배 판매량 증가, 담배갑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 정부 금연정책에 따라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는 최근 6년중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특수요인('15년, '16년)을 제외한 최근 4년 평균 담배 판매량 증가율과 흡연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연도별 담배소비세 징수 추이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추계
예 산 액	484,436	499,676	634,255	624,383	565,175 (△9.5%)
결산(징수)액	542,316	661,192	634,736	440,396 (70.5%)	-

※ 2018년도분 결산전망액: 571,227백만원(결산예상률 91.4%)

- 2019년도 담배소비세 세입 예산액은, 전자담배 증가, 흡연률 감소로 전년대비 9.5%(592억원) 감액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결산액 추이 또는 같은 여건하에 있는 2018년 징수전망액으로 볼 때, 2019년도 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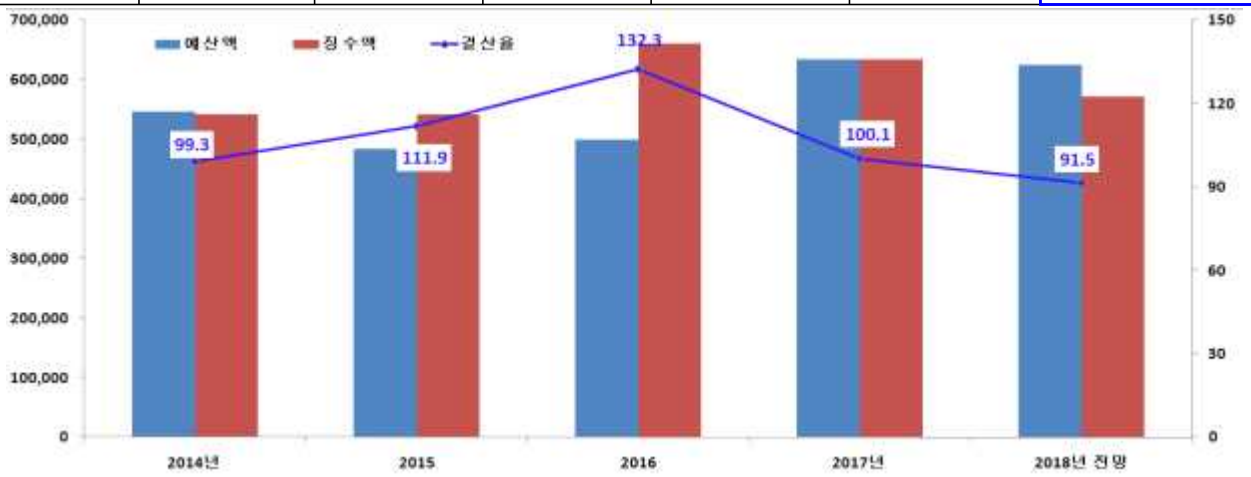
◇ 담배소비세 추계 : 5,651억 7천 5백만원

산 출 내 역	
○ '18년도 징수전망액 × 담배판매량 증감률 × 흡연증감율 = '19년 추계액	
(571,227백만원 × 98.99%) × 99.95%	
= 565,175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 산 액	546,333	484,436	499,676	634,255	624,383	565,175
징 수 액	542,314	542,316	661,192	634,736	571,227	
결 산 율	99.3	111.9	132.3	100.1	91.5	



## ■ 재산세

- 재산세는 자치구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기 위해 2007년 7월 신설된 특별시분 재산세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총 2조 6,151억 1천 6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10.4% 증가)을 편성하고 있음.
  - “특별시분 재산세”는 2019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합산하여 2019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을 적용하여 1조 2,120억 2천 5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12.6% 증가)을 계상하고 있으며,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된 바, 과세대상별 과표증감률 등을 감안하여 1조 4,030억 9천 1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8.5% 증가)을 계상하고 있음.

### ◇ 최근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주택	평균	8.76	6.65	5.35	3.35	1.91
	단독	7.32	5.18	4.51	2.40	2.99
	공동	10.19	8.12	6.20	4.30	-6.80
건 물	2.99	1.52	1.54	1.56	3.23	1.64
토 지	6.84	5.26	4.08	4.47	3.35	2.86

- 그러나, 2019년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인 재산세가 증가하고 있고, 연도별 세입 결산액 또한 최근5년간 5.0%이상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음.

○ 또한, 당초 예산이 잘못 추계되어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있는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과 함께 2019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적정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 평균 재산세 세입예산 증가율: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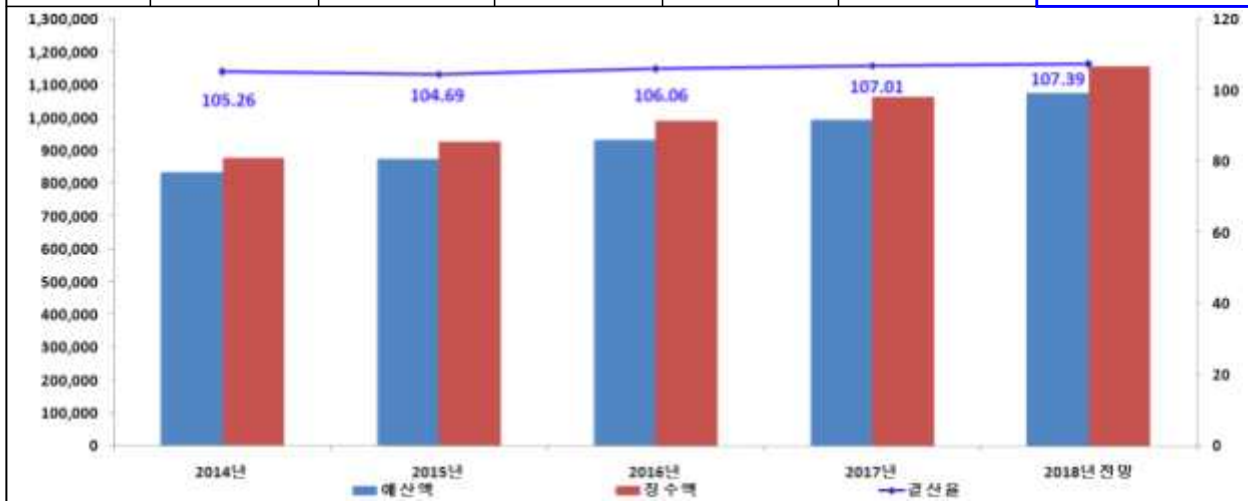
▶ 재산세 추계(A+B) : 2조 6,151억 1천 6백만원

◇ 특별시분재산세(A) : 1,212,025억원

산 출 내 역	
○ '19년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 × '19년 특별시분재산세 세입비율 = '19년 추계액 2,424,050백만원 × 50.00% = 1,212,025백만원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835,475	875,250	934,700	994,735	1,076,672	1,212,025
징수액	879,455	927,503	991,387	1,064,505	1,156,287	
결산율	105.26	104.69	106.06	107.01	10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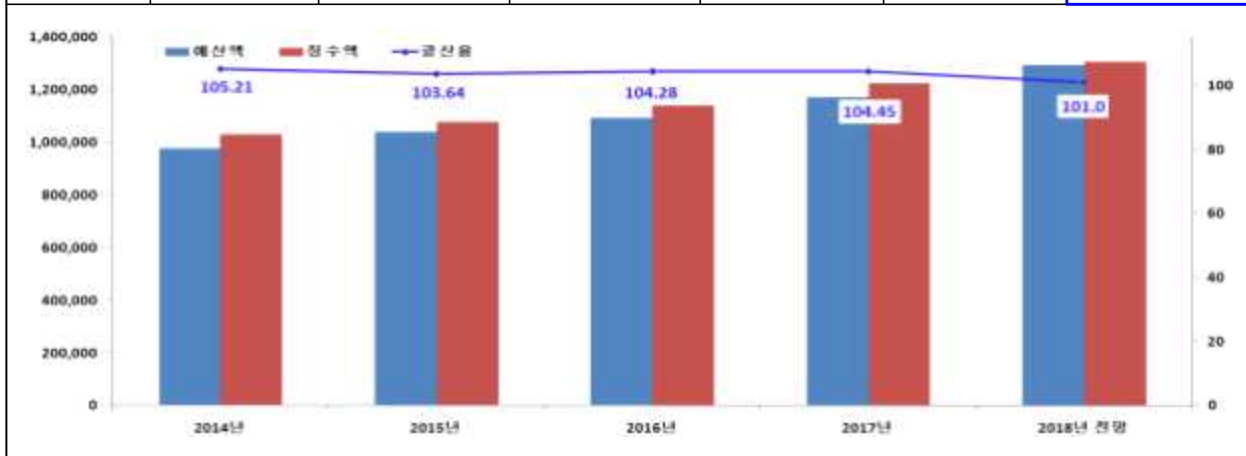
◇ 도시지역분 재산세(B) : 1조 4,030억 9천 1백만원

산 출 내 역	
○ 주택(A) : 공동주택(B) + 단독주택(C) = 2019년 추계액	678,255백만원 + 109,889백만원 = 788,144백만원
▶ 공동주택(B) : ('18년도 부과전망 × 공동주택 점유비 × 공시가격 증감률 주택수증감률) × 징수율	(728,708백만원 × 84.95% × 109.16% × 102.41%) × 98.01% = 678,255백만원
▶ 개별주택(C) : ('18년도 부과전망 × 개별주택점유비 × 공시가격 증감률 주택수증감률) × 징수율	(728,708백만원 × 15.05% × 106.25% × 96.22%) × 98.01% = 109,889백만원
○ 토지(D) : ('18년도 부과전망 × 공시지가증감률) × 징수율	(489,912백만원 × 105.16%) × 98.36% = 506,742백만원
○ 건물(E) : ('18년도 부과전망 × 기준가액 증감률) × 징수율	(108,040백만원 × 102.02%) × 98.17% = 108,205백만원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978,710	1,039,661	1,093,174	1,171,663	1,292,759	1,403,091
징수액	1,029,739	1,077,532	1,139,913	1,223,779	1,305,698	
결산율	105.21	103.64	104.28	104.45	101.0	



◇ 2019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예산액 : 총 1,212,025백만원

○ 2019년 현년도분 공동재산세 각 구별 추계액 : 1,212,014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자치구 재산세 추계				특별시분 재산세
	주 택	건 물	토 지	계	
계	1,059,948,439	202,766,856	1,161,312,197	2,424,027,492	1,212,013,751
종 로 구	16,603,568	8,875,248	63,671,937	89,150,753	44,575,377
중 구	12,829,890	15,642,231	101,771,630	130,243,751	65,121,876
용 산 구	51,290,530	6,330,593	49,595,022	107,216,145	53,608,073
성 동 구	33,704,906	5,287,651	23,646,219	62,638,776	31,319,388
광 진 구	26,286,433	4,506,020	23,559,679	54,352,132	27,176,066
동대문구	20,918,424	5,057,199	24,077,910	50,053,533	25,026,767
중 랑 구	15,034,749	2,961,957	14,398,063	32,394,769	16,197,385
성 북 구	28,663,684	3,478,228	18,603,413	50,745,325	25,372,663
강 북 구	11,512,917	2,644,157	13,131,592	27,288,666	13,644,333
도 봉 구	15,179,717	2,173,695	9,476,135	26,829,547	13,414,774
노 원 구	27,746,080	3,526,454	16,321,034	47,593,568	23,796,784
은 평 구	23,012,202	3,714,955	20,306,560	47,033,717	23,516,859
서대문구	22,910,528	3,717,957	18,252,513	44,880,998	22,440,499
마 포 구	38,177,089	10,574,439	48,564,339	97,315,867	48,657,934
양 천 구	46,761,766	5,015,609	18,449,640	70,227,015	35,113,508
강 서 구	34,058,788	11,433,644	45,081,954	90,574,386	45,287,193
구 로 구	21,869,042	7,399,894	24,242,436	53,511,372	26,755,686
금 천 구	9,232,404	8,880,872	18,597,614	36,710,890	18,355,445
영등포구	38,346,000	14,724,000	53,752,000	106,822,000	53,411,000
동 작 구	32,640,000	3,578,000	20,046,000	56,264,000	28,132,000
관 약 구	20,170,957	5,503,326	22,319,275	47,993,558	23,996,779
서 초 구	149,257,034	15,379,814	126,636,004	291,272,852	145,636,426
강 남 구	196,942,170	31,483,260	257,958,320	486,383,750	243,191,875
송 파 구	130,803,556	15,609,997	91,959,999	238,373,552	119,186,776
강 동 구	35,996,005	5,267,656	36,892,909	78,156,570	39,078,285

## 목적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 바, 전년대비 2.0% 증가된 1조 7,043억 6천 1백만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9.6%(전년도 9.8%)를 차지하고 있음.

###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연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 대형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되며, 총 2,848억 6천 8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3.2%)으로 추계하고 있음.
  - “특정자원분”은 지하수와 화력발전이 과세대상으로, 지하수는 기타 용수에 해당하는 지하수에 과세되며 상하수도의 사용 증가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화력발전은 도심지에 위치(마포, 송파)하고 있으나 가동율은 낮아 4억1천만원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세율 요약

-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지하수 세율 : 음용수(1<sup>m</sup> 당 200원), 온천수(1<sup>m</sup> 당 100원), 기타(1<sup>m</sup> 당 2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kWh 당 0.3원

- “특정부동산분”은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의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 추세에 따라 세입은 증가하여 총 2,844억 6천 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18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등 유형별 점유비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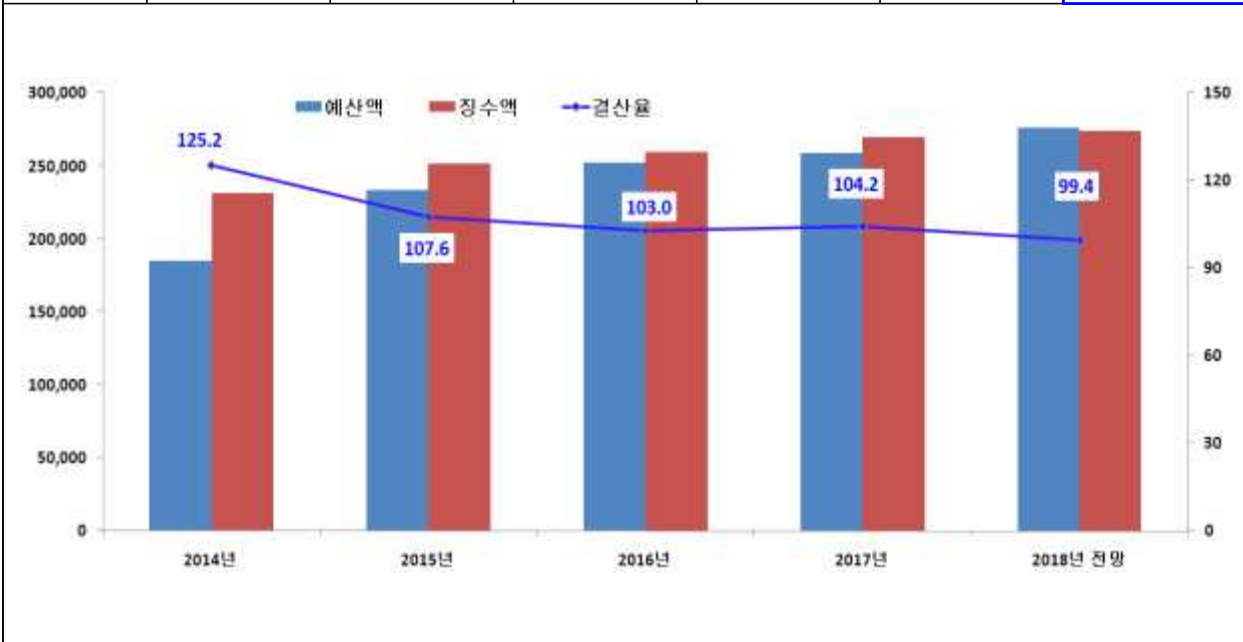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주택	평균	8.76	6.65	5.35	3.35	1.60
	단독	7.32	5.18	4.51	2.40	4.09
	공동	10.19	8.12	6.20	4.30	-0.90
건물	2.99	1.52	1.54	1.56	3.23	1.64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185,046	233,714	252,023	258,985	275,965	284,868
징수액	231,655	251,361	259,467	269,844	274,207	
결산율	125.2	107.6	103.0	104.2	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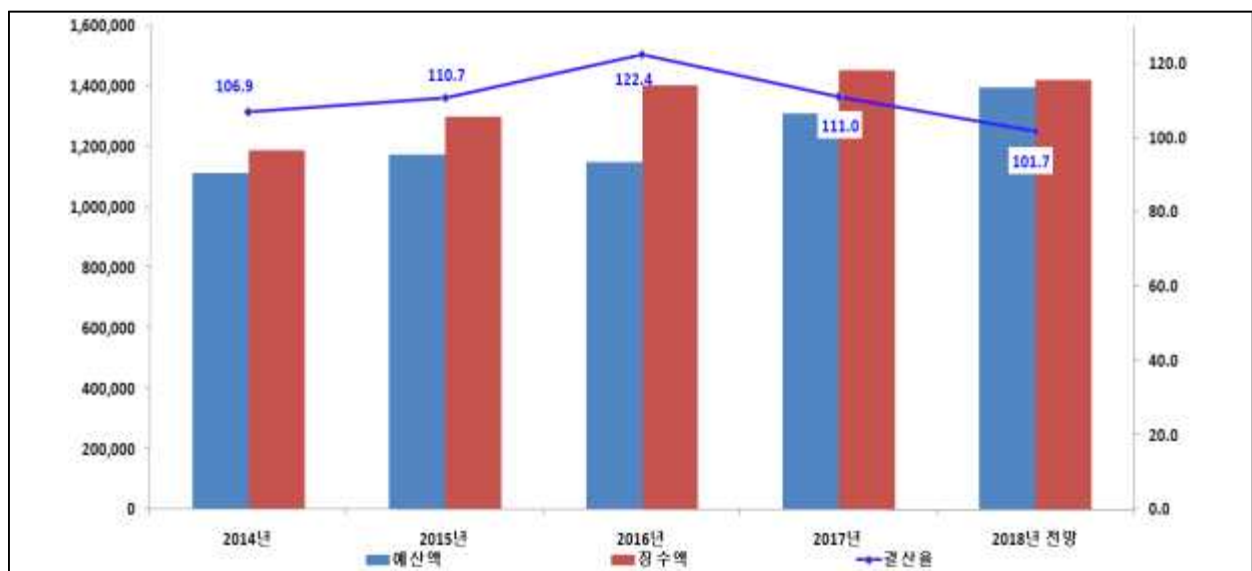
##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취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43.99%), 레저세(40%), 균등분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록분면허세(2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로, 1조 4,194억 9천 3백만원(전년 예산대비 1.7% 증가)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관련 본세의 과오추계에 따라 매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교육청의 적정 세입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서울시의 적정 세입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1,111,703	1,172,546	1,147,581	1,309,577	1,395,553	1,419,493
징수액	1,187,905	1,298,199	1,404,846	1,453,765	1,419,536	
결산율	106.9	110.7	122.4	111.0	101.7	



## 지난연도 시세

- 지난연도 수입은 해당연도 출납정리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한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2019년도 지난년도 시세의 경우는 전년 대비 6.4% 감액한 2,215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지난연도 시세 예산편성 및 징수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178,481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징수액	177,187	179,681	237,356	209,405	202,843	
결산율	99.3	98.5	105.4	89.8	85.7	

- 법인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은닉 재산 추적, 신규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등으로 매년 징수규모는 일정한 추세이나 신규체납 증가에 따라 체납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 체납징수율 변화 추이

'06년(19.59%) → '07년(18.83%) → '08년(19.72%) → '09년(22.18%)  
 → '10년(20.08%) → '11년(18.24%) → '12년(16.58%) → '13년(15.70%)  
 → '14년(13.80%) → '15년(14.08%) → '16년(16.75%) → '17년(15.77%)

- 재무국은 38세금징수와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체납활동 전개를 통해 징수가능한 세입은 상당부분 징수하고, 대부분은 징수가 어려운 체납분이며, 체납자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세입 징수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 한편으로는 체납징수 여건악화라는 명분으로 전례없이 징수목표를 낮춘 것은, 지속적으로 결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낮은 목표 산정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높은 결산율로 포장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최저 결산율을 보이고 있는 현 38세금징수과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최근3년간 지난연도 시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17	2,333	2,333	2,094	-239	-10.2
2016	2,253	2,253	2,374	121	5.4
2015	1,825	1,825	1,797	-28	-1.5

- 38세금징수과는 징수목표를 낮춘 반면 징수 포상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지양하고, 세목별(재산과세 또는 소득과세), 납세자별(법인 또는 개인) 체납특성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체납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향적인 체납징수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체납세액의 80%를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 직원에 대한 나눠먹기식 포상금 지급제도의 개선 등 자치구의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년말 지난연도 체납 예상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 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 방 교육세
연말체납 (A-B-C)	783,641	45,516	11,888	568,670	58,299	34,918	33,304	4,497	26,549
연초체납 (A)	1,124,872	68,139	15,232	767,229	114,446	54,397	43,700	7,659	54,070
징수전망 (B)	142,553	8,695	771	43,195	46,293	14,377	6,581	2,176	20,465
결손전망 (C)	198,678	13,928	2,573	155,364	9,854	5,102	3,815	986	7,056

※ 징수율은 '15년 이전 세목별 5년 평균 최저 징수율, 결손율은 최근 2년 평균 결손율 적용

◇ 지난연도 시세 세목별 징수율 및 결손율 현황

(단위 : %)

구 분	취득세	주민세	지 방 소 득 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 방 교 육 세
징 수 율	12.76	5.06	5.63	40.45	26.43	15.06	28.41	37.85
결 손 율	20.44	16.89	20.25	8.61	9.38	8.73	12.87	13.05

※ 담배소비세 징수율 및 결손실적은 “0”으로 실적에 미반영

◇ 지난년도 시세 추계 : 2,215억 6천 7백만원

산 출 서 식

◦ ('18년 세목별 총체납 예상액 × 세목별 징수율) + 특수요인 = '19년 추계액

◇ 2019년 지난년도 시세 세목별 추계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예상 체납현황			2019년 추계현황			
	지난연도 체납(A)	신규발생 체납(B)	총체납 (C=A+B)	징수율 (D)	징수액 (E=C×D)	특수요인 (F)	추계액 (E+F)
합 계	783,641	326,551	1,110,192	13.44	150,932	70,635	221,567
취 득 세	45,516	15,698	61,214	12.76	7,811	3,283	11,094
주 민 세	11,888	7,089	18,977	5.06	960	1,743	2,703
지 방 소 득 세	568,670	151,667	720,337	5.63	40,555	10,721	51,276
자 동 차 세	58,299	76,350	134,649	40.45	54,466	33,946	88,412
특 별 시 분 재 산 세	34,918	18,563	53,481	26.43	14,135	4,154	18,289
도 시 지 역 분 재 산 세	33,304	20,105	53,409	15.06	8,043	4,154	12,197
지 역 자 원 시 설 세	4,497	4,225	8,722	28.41	2,478	686	3,164
지 방 교 육 세	26,549	32,854	59,403	37.85	22,484	11,948	34,432

◇ 최근5년 예산 및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178,481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징수액	177,187	179,681	237,356	209,405	202,843	
결산율	99.3	98.5	105.4	89.8	85.7	



## 세외수입

2019년 재무국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시·도반환금수입, 시금고출연금 등)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1%(전년도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최종예산 6,080억 8천 5백만원 대비 24.2%(1,468억 8천 6백만원) 증액한 7,549억 7천 1백만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고 있음.

###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최근 3년 평균 징수액 및 징수율에 지가 상승률(1.84%)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6%(9억 6천 2백만원) 증액한 121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유재산 무단 점유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임대료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실적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추계
예 산 액	6,220	14,721	10,849	11,225	12,187
결산(징수)액	4,855	15,508	11,182	891(79.3%)	-

## ■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으로써 시금고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적용되는 신규약정 금리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2018년도 예산대비 1.6%(6억 9천 5백만원) 감액한 433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19년부터 적용되는 신규약정 금리 산정 기준(1.85%→1.52%)에 따라 이자액 조정

※ 기준금리(COFIX) : 2010년 2월 16일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 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

- 다만, 2018년까지 공공예금 금리는 시금고 운영 약정서 상 1.85%로 고정되어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였음.
- 그러나, 시금고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공공예금에 대한 금리가 변동금리로 변경되었고, 약정금리(1.85%→1.52%) 또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금리변경 없이 적용되어 오던 금리가, 금고 변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이율이 발생 되도록 변경된바,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서 공공예금과 정기예금간 금리 비교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 운영에 면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이자수입 징수 실적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추계
예 산 액	20,446	22,056	25,002	44,075	43,379
결산(징수)액	25,044	46,134	55,388	43,091(97.8%)	-

■ 공유재산매각수입

-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14년~'18년) 징수액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치와 특별매각분 추계액을 감안하여, 2018년 예산 대비 14.0%(7백 2십 3억원) 증액한 5,872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 연도별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추계
예 산 액	548,868	610,478	511,875	514,961	587,255
결산(징수)액	61,247	33,276	49,931	92,370(17.9%)	-

※ 2018년도분 결산전망액: 104,341백만원(결산예상률 20.3%)

<2019년 세입추계>

<p>② 2019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상세한 내용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추계액 : 587,255,451천원</li> <li>○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징수(72,294,519천원) + 특별징수(514,960,932천원)</li> <li>- 일반징수 : 최근 5년 중 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액</li> <li>- 특별징수 : 서울의료원 매각(514,960,932천원)</li> </ul> </li> </ul>
--

**<2019년 재무국 세입예산 명세서 중>**

예산과목	예산액			세입내용
	2018 예산	2019 예산(안)	증감	
입사적세외수입	550,983,624	606,586,813	145,603,189	
재산매각수입	514,960,932	587,255,451	72,294,519	
공유재산매각수입	514,960,932	587,255,451	72,294,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료원 매각수입 514,960,932</li> <li>○ 사유재산 매각수입금 72,294,519</li> </ul>

○ 이중, 서울의료원에 대한 매각 예정가격은 전년도와 같은 9,363억원 (감정평가 후 변경 가능)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매각수입’에 5,15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나, 2014년 이후 5년간에 걸쳐 서울의료원 매각이 불발됨으로써 반복적이고 막대한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서울시 전체 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매년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대책 등에 의해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세출예산의 집행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바, 관계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입 (매각수입)	예산	300,000	473,462	534,875	437,600	514,961	587,255
	결산	-	-	-	-		
세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	623	663	-	615	615
	결산	-	663	615	-	-	

※ 자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8쪽

##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재무국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예산은 '변상금'과 '위약금'으로 구성되며, 일정기간 징수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6%(4억 2천 7백만원) 감액한 6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b>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b>	
		223-03 변상금	1.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
		223-04 위약금	1.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 다만, 2014년과 2016년의 경우 예산 대비 결산비율이 각 93.9%와 126.7%에 달하고 있는바, 2019년 예산을 전년 대비 61.4%(6억 7천 9백만원)로 편성한 것은 다소 보수적인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 연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실적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추계
예 산 액	1,281	1,288	1,275	1,173	1,106	679 (61.4%)
결산(징수)액	1,203(93.9%)	631(49.0%)	1,616(126.7%)	431(36.7%)	261(23.6%)	-

※ 2018년도분 결산전망액: 580백만원(결산예상률 52.4%)

□ 종합적으로 금번 2019년도 재무국의 세입 추계를 살펴볼 때,

- 먼저, 지방소득세의 근간인 국세(소득세 등)의 2019년 세입은 전년 대비 17.5% 증액 편성한 반면, 지방소득세는 8.0% 과소 편성한 점,  
※ 매년 국세 및 시세의 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
- 둘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감소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2019년도 부동산 취득세를 우려에 비해 전년 대비 2.7% 수준으로 감액 편성한 점,
- 셋째, 지방소비세는 그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은 전년 대비 7.3%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소비세는 12.1% 과다 증액 편성 한 점,  
※ 매년 국세 및 시세의 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
- 넷째, 2014년 이후 계속되는 유찰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차 서울의료원 매각수입(5천 1백 5십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점,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무국의 2019년도 세입 추계는 세출 소요에 맞추기 위하여 세입추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각 세입항목별 경기상황과 세입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편성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3. 세출예산 검토

○ 재무국 소관 2019년 세출예산은 전년(2조 3,206억 9천 9백만원) 대비 2.8%가 증액된 2조 3,858억 9천 6백만원 수준임.

※ 2018년도 간주처리(18억 2천 3백만원) 및 추가경정예산(1,307억 5백만원), 예비비 사용(8억 3천 7백만원)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4,538억 3천 3백만원 대비 2.8%가 감액된 수준임.

#### 가.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시유재산 매각·교환 추진을 위한 재산수입 증대,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심의 등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4% 감액(7억 1천 2백만원)한 26억 1천 7백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3,329,843	3,329,843	2,617,437	△712,406	△21
사무관리비	1,991,470	1,991,470	1,474,350	△517,120	△26
공공운영비	907,073	907,073	1,131,787	224,714	2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300	11,300	11,300	0	0
시설비	399,000	399,000	0	△399,000	△100
감리비	21,000	21,000	0	△21,000	△100

○ ‘사무관리비’(전년대비 5억1천7백만원 감액한 14억7천4백만원)는 감정평가수수료(8억1천7백만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7백만원), 재산관리 수수료(5억5천만원),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1억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감정평가수수료 = 1,152,498천원	○ 감정평가수수료 = 817,000천원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7회*7명*150,000원 = 7,350천원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7회*7명*150,000원 = 7,350천원
	○ 재산관리 수수료(측량비 등) = 576,000천원	○ 재산관리 수수료(측량비 등) = 550,000천원
	○ 타당성 조사 수수료 = 150,000천원	○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 100,000천원
	○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 105,622천원	
	- 신,중축 건물 및 신규취득 시설물 보험가입으로 인한 가입대상 및 재산등록가액 증가분(12개월분 연간 전년도 공제회비 산정액의 10%) 반영	
	- 일반보험사 가입분에 대한 공제회 변경 가입으로 인한 증가분 반영	
	- 공공건축물 태양광 설치 관련 사업 종료	

○ 감정평가수수료 중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로 2015년에 6억6천3백만원, 2016년에 6억1천5백만원을 집행했으나, 매각이 유찰되면서 12억7천8백만원의 매물비용이 발생하였고, 2018년에도 6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또다시 매각불발로 결국 불용 처리가 예상됨에도, 2019년 예산에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는바, 매각 불발에 따른 매물비용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운영의 효율성 또한 반복적으로 저해하고 있는바, 재무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매각수입)	예 산	300,000	473,462	534,875	437,600	514,961	587,255
	결 산	-	-	-	-		
세 출 (감정평가 수수료)	예 산	-	623	663	-	615	615
	결 산	-	663	615	-	-	

※ 자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8쪽



## 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한 법정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방세제 개선 및 지방 재정 확충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4%(17억 9천 7백만원) 감액한 22억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017년도분에 대한 지급보류 결정으로 2018년도에 2개년분(40억 4백만원)을 일시에 출연함에 따른 것임.

###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4,043,987	4,043,987	2,247,130	△1,796,857	△44
출연금	4,043,987	4,043,987	2,247,130	△1,796,857	△44

- 재무국은 법령이 정한 일정금액(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을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8년까지 전국 지자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579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이 출연한 금액은 118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41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4.5%에 달하고 있음.

###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서울시전체 (A=B+C)	60,281	4,114	4,778	6,913	8,040	7,448	8,589	7,932	12,467
시본청(B)	11,804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자치구(C)	2,361	174	181	326	328	312	313	362	365
출연금합계(D)	57,920	3,940	4,597	6,587	7,712	7,136	8,276	7,570	12,102
출연금 중 시본청 비율 (B/D×100)	20.4	20.2	20.7	14.5	25.6	20.3	19.8		33.4
출연금 중 서울시전체 비율 (A/D×100)	24.5	24.6	24.7	19.4	29.9	24.6	23.6	4.8	36.4

- 2019년 출연금 관련 출연동의안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결산 세입규모 순증(최근 5년간 평균 8.6% 상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바, 출연금 비율 인하를 위한 재무국의 보다 적극적인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무국은 출연비율(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0.01%)의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정협의회 대정부건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토록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법인의 종류 또한 정체성이 모호한 ‘기타법인’으로 등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라면 당연히 적용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출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차단되고 있음에도,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는 등 현행 법령 체계의 모순에 대하여 재무국은 출연금 출연에 앞서 법률자문 등을 거친 법령 개정 추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납세조합 보조**

-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세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그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법정 교부금(기타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 증액(1천6백만원)된 5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531,000	531,000	546,930	15,930	3
출연금	531,000	531,000	546,930	15,930	3

- 현재까지 납세조합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으나, 국세 징수교부금은 누진제로, 평균 2.3%를 지급하고, 지방세의 경우 5%의 징수교부금을 고정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7년간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지급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장수액	50,218	7,380	9,460	6,680	9,540	6,100	5,529	5,529
결산액 (5%)	2,584	443	473	334	477	305	276	276

-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세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률이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징수교부금 지급률을 국세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주문한 결과, 지난 11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공히 지급률을 2%로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40일 소요) 하였음.
- 입법예고에 따르면 2019년도 징수교부금 지급율은 기존 5%에서 2%로 낮아지므로, 개정 지급율에 따른 2019년도 세출예산액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무국은 현행 국세에 비해 과다한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지급률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납세조합 제도는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민간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세정제도에는 부합되기 어렵고, 납세조합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sup>4)</sup>되고 있는 바, 납세조합 징수제도 폐지에 대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검토 등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라.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공통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 및 반납물품 처분, 재활용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자재창고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5% 감액(4억 8천 6백만원)된 10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539,418	(x-) 4,272,876	(x-) 1,053,718	(x-) △3,219,158	(x-) △75
사무관리비	(x-) 111,300	(x-) 111,300	(x-) 97,300	(x-) △14,000	(x-) △13
공공운영비	(x-) 588	(x-) 588	(x-) 588	(x-) 0	(x-) 0
국외업무여비	(x-) 40,000	(x-) 40,000	(x-) 50,000	(x-) 10,000	(x-) 2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20,000	(x-) 20,000	(x-) 20,000	(x-) 0	(x-) 0
특정업무경비	(x-) 66,000	(x-) 66,000	(x-) 69,000	(x-) 3,000	(x-) 5
연금지급금	(x-) 686,000	(x-) 3,419,458	(x-) 0	(x-) △3,419,458	(x-)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x-) 615,530	(x-) 615,530	(x-) 816,830	(x-) 201,300	(x-) 33

4) 한국조세연구소 '납세조합의 효율적 관리개선 방안'(2005.3.) 145페이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내역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예산현액	불용액	예산현액	불용예상액	예산편성액
계	1,477	211	1,464	153	4,629	1,568	1,054
201-01 사무관리비	104	13	85	10	111	0	97
201-02 공공운영비	1	0	1	0	1	0	1
202-03 국외업무여비	40	1	40	14	40	33	50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	0	18	0	20	0	20
204-03 특정업무경비	76	12	69	4	66	1	69
307-07 연금지급금	600	168	636	123	3,776	1,535	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36	16	616	1	616	0	817

- 국외업무여비는 2017년 4천만원을 편성하여 36.0%(1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2018년의 경우 4천만원 편성하여 81.8%(3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는 오히려 전년대비 25.0%(1천만원) 증액 편성(5천만원)하였는바, 적절한 수요조사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행태를 지양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기관에 소요되는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 기기와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및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구매비용 증가를 이유로 전년대비 32.7%(2억 1백만원) 증액하여 8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물품 취득 및 교체 등에 있어서 반납물품의 재활용과 불용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수관리 및 예산 절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는 예산(연금 지급금(307-07))으로, 기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에서 분리되어 신규 설치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5% 증액(9억 7천 6백만원)된 43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연금지급금 통계목: 2018년까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에, 2019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사업 통계목으로 편성
- 2019년도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494명에 대하여 퇴직금 관련 공무원법 개정(2018.9.21.)으로 개정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것임.

#### 〈 예산액 산정 근거 〉

퇴직금 지급 대상(총인원) : 800명(시간제 임기제, 시간제 채용, 한시임기제)
18년 수요조사 인원 : 306명 (전직공무원 출신자)
19년 퇴직금 지급대상(최대) : 800-306 = 494명
퇴직금 수요액 : 평균값 - 9,584,733원
중위값 - 8,897,065원
요청액 : 8,897,065원 * 494명 = 4,395,150,110원

- 한편, 2018년도에는 공무원 출신의 시간제 근로자의 연금 수급이 일시 정지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시행)에 따른 일시 퇴직자 증가로, 재무국에서는 예비비(3억 5천 7백만원)를 사용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27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한 후, 무려 40.6%(15억 3천 5백)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바,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한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18년도 하반기 부서별 퇴직금 수요조사>**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기타 실·국
인 원	306	265	18	12	11
퇴 직 금	2,733,457	2,446,777	102,188	104,322	80,170
편성 사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예상자			임기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자

※ '18년 6~7월 두차례 실·국 수요조사를 통해 실국별 퇴직예상자와 금액 확정

**< 2018년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금회사용액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기획조정 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168,643,444	-	356,501	168,286,943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민간이전 (307)	연금지급금 (307-07)	686,000	356,501	-	1,042,501

※ 예비비 사용승인 알림 (예산담당관-7867, 2018.7.23.)

**< 2018년 연금지급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8 예산	추경안	증감	증기율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539	4,273	2,734	177.6
연금지급금(307-07)	686	3,419	2,734	398.5

**<연금지급금 예산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예산현액	불용액	예산현액	불용예상 액	예산편성 액
307-07 연금지급금	600	168	636	123	3,776	1,535	0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기타직보수(101-02)로 계상하고 있고,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연금지급금(307-07)으로 계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 및 예산관련 법령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바.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 체납시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공무원과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체납세입 징수실적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0.1% 증액(3백 5만원)한 22억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219,432	(x-) 2,219,432	(x-) 2,222,482	(x-) 3,050	(x-) 0
사무관리비	(x-) 3,600	(x-) 3,600	(x-) 3,600	(x-) 0	(x-) 0
기타보상금	(x-) 30,000	(x-) 30,000	(x-) 30,000	(x-) 0	(x-) 0
포상금	(x-) 2,185,832	(x-) 2,185,832	(x-) 2,188,882	(x-) 3,050	(x-) 0

- 서울시 체납 징수목표 달성률 추이를 보면, 2017년도 결산 결과 목표 달성률은 89.8%로 최근 5년내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는 85.7%(△4.1%)로 전망되고 있음.

〈지난연도 시세 예산편성 및 징수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전망	'19년 추계
예산액	178,481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6.4%)
징수액	177,187	179,681	237,356	209,405	202,843	
결산율	99.3	98.5	105.4	89.8	85.7	

- 또한,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누적체납이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2019년 징수목표를 6.4% 하향(△150억원) 편성하고, 체납 징수 포상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재무국의 지방세 체납 징수에 임하는 태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인적쇄신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억원)

구분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체납액 (D=A-B-C)	체납율 (D/A)
2014년	12,837	1,772	2,196	8,869	69.1%
2015년	12,765	1,797	1,035	9,933	77.8%
2016년	14,167	2,373	2,348	9,446	66.7%
2017년	13,282	2,094	2,580	8,608	64.8%
2018.8월	12,097	1,651	279	10,167	84.0%

※ 행정사무감사 자료 938쪽

### 사. 재정보전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 재정보전금(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은 면허세 보전분과 함께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시세로 징수하여 이를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 증액(460억 7천 1백만원)한 1조 2,436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128,175,000	(x-) 1,197,593,382	(x-) 1,243,665,000	(x-) 46,071,618	(x-) 4
자치구기타재원 조정비	(x-) 1,128,175,000	(x-) 1,197,593,382	(x-) 1,243,665,000	(x-) 46,071,618	(x-) 4

- 시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징수법」 및 「서울특별시세징수조례」에 따라 매월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납입한 위임 징수 시세에 대하여 그 처리비로 납입액의 3%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7%를 감액(449억 2천 5백만원)한 3,749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361,354,080	(x-) 419,906,628	(x-) 374,981,670	(x-) △44,924,958	(x-) △10
징수교부금	(x-) 361,354,080	(x-) 419,906,628	(x-) 374,981,670	(x-) △44,924,958	(x-) △10

○ 재정보전금은 특별시분재산세 추계액 전액을, 시세징수교부금은 자치구에 위임징수하는 7개의 세목 징수액 추계액의 3%를,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하나, 재무국은 해당 세목에 대한 지난연도(체납) 세입 추계액을 제외하여 교부하고, 제외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교부하려 하고 있으나,

※ 재정보전금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조 내지 제10조

※ 시세징수교부금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징수교부금 교부대상 :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공히 해당 지난연도수입 포함)

〈 재정보전금(재무국 세제과) 〉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시세 전망액	2019년 재정보전금 예산(안)
계	1,230,314	1,212,025
특별시분재산세	1,212,025	1,212,025
지난년도수입 (특별시분재산세)	18,289	0

〈 징수교부금(재무국 세무과) 〉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시세전망액 (A)	2019년 징수교부금추계 B=(Ax3%) (379,478)	2019년 징수교부금예산(안) (C)	차이 (B-C)
합계	12,684,635	380,539 (379,478)	374,982	5,557 (4,496)
교부대상 세목	12,499,389	374,982	374,982	0
지난년도수입 (38과 제외)	185,246 (149,885)	5,557 (4,496)	미반영	5,557 (4,496)

○ 재정보전금 및 시세징수교부금은 모두 법정 전출금으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사용되는 자치구 세입의 중추적인 측면임을 감안하여, 다음연도에 부족분을 지급함으로써 자치구의 예산 예측 가능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지난연도 시세 세입에 대한 추계액\*을 누락하고, 반복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지급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3,846백만원: 재정보전금(18,289백만원) + 시세수교부금(5,557백만원)